

특집 I / 제1회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⑤

수의행정 및 연구기능의 활성화 방안

배 상 호

1. 검토배경 및 필요성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축산물의 양적생산에서 질적인 생산 즉, 고품질의 위생처리육을 요구하고 있음.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접어들면서 육류소비자는 급증하고 있음('70 : 5.2kg → '93 : 25kg).

-국내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즉, 동물약품, 농약·중금속 등의 규제강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

-UR/SPS 협정의 무차별 원칙에 따라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 실시에 따라 국내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시기에 처하고 있음.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식품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and Control Point) 제도의 국내적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WTO 출범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지역 다변화 및 교역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WTO/SPS 협정에 따라 동물 및 축산물검역의 무차별 원칙,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원칙, 수입지역의 지역성 인정, 각종 제도·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쇠고기는 2001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97. 7. 1부터 완전자유화 하기로 예시하고 있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List A 질병 15종중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질병은 2종(돼지콜레라, 뉴캐슬병)에 불과하나 기타 질병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는 검역기술 인력확보, 검역장비 및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가축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세계화에 걸맞는 균형된 행정조직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는 국가고유업무로서 지방화 시대에도 이는 국가중앙통제로 업무를 오히려 강화하여야 할 업무임.

-외국의 경우

· 일본은 농림성에 “가축위생과”와 후생성 “유육위생과”로 구분하여 업무담당

·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수의국(또는 수의청)에서 업무담당

-또한 외국과의 업무협의를, 협상시의 동등한 자격요건을 위하여 상호대등한 레벨의 직급(최소한 국장급)유지가 필요함.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관리청” 신설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체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국민보건향상 및 국내축산업보호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가격관리 및 보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즉, 농민과 국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즉, 미국의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체제로의 개편이 요구됨.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

2. 가축위생업무의 여건변화(행정수요 및 업무량 증가)

가. 새로운 업무개발 등 추진

○축산분뇨처리기술 보급 및 자원화 추진

-축산경영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축산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축산분뇨처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분뇨를 자원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예 : 네덜란드 등의 경우 양돈장의 생산비중 축산폐수처리비가 15%, 가축방역비가 5%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5%, 15%)인 실정임).

-분뇨는 전염병 전염원으로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도 중요시되고 있음.

○축산물 잔류물질 방지대책 추진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내산 육류내의 항생제, 설파제 등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양성으로 확인된 바 있음.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이유(양축가 손실, 소비자 불신 등)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SPS 협정의 무차별 원칙, 국민의 국내산 육류의 신뢰도 제고로 국내산 육류의 고품질화 유도,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잔류물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현재는 매년 45,000건의 모니터링을 실시,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잔류원인 분석결과

휴약기간 미준수	불법약제 사용	사료 오염	시양관리 불량	계
54.5	27.3	9.1	9.1	100%

○축산물가공업의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추진

-'85. 7. 1일자로 축산물위생처리법(중진 :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가공품은 보건복지

부 소관사항으로 이관.

-그러나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축산물위생업무의 전문적인 수의사가 관장하여야 하며, 생산자인 양축농가와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미국·캐나다·이태리·프랑스 등 모든 나라에서는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후생성 육육위생과(수의사)에서 가공업무를 관장함.

※수입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동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1차 가공품(포장육)은 지침을 개정하여 동물검역소로 업무이관.

○종식단계에 있던 또는 새로운 가축전염병의 발생
-광견병의 경우 '85년에 1두 발생된 이래 8년만에 '93년 12월에 발생되었고, '94년에도 29두 발생.

·휴전선 인근지역의 야생동물(오소리, 너구리)에 의하여 감염확인.

-탄저의 경우 '78년에 1두 발생된 이래 16년만에 '94년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되었으며 '95년에도 인천지역에서 발생된 바 있음.

-돼지오제스키병은 '87년, 닭전염성 후두기관염(LL-T)는 '84년, 가시웅에는 '91년부터 국내 처음 발생.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맞는 법령·제도정비 및 운용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및 약사법 운용.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공고 등의 제정·개정 등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을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100여개 운용하고 있으며 100여개국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나. 위생업무의 증가(현황 별첨)

○도축검사('70기준 '94대비 : 4.2배 증가)

○원유검사('70기준 '94대비 : 4.2배 증가)

○가축방역(검진)('70기준 '94대비 : 2.4배 증가)

○검역('70기준 '94대비 : 3.0배 증가)

3. 외국의 수의관련 기구 비교

업 무	한 국	미 국	일 본
중앙조직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농무성(USDA) -식품위생검사국(FSIS)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	농림성-가축위생과 후생성-유육위생과
가축질병 연구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	농무부 농업연구청 국립 가축질 병센터(NADC/ARS/USDA)	농무성 가축위생시험장
가축방역 진단 (병성감정)	수의과학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 혈청검사소 (NVSL/APHIS/USDA)	지방 가축보건소
수출입동물검역	동물검역소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 혈청검사소 (NVSL/APHIS/USDA)	농무성 동물검역소
동물약사	농림수산부 (수의과학연구소)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국립수의 혈청검사소 (NVSL/APHIS/USDA) 보건부 식품의약품 관리청 수의 학 센터(CVM/FDA/USDHHS)	농무성 동물약품검사소(중앙약 사심의위원회)
축산물 위생	수의과학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FSIS/USDA)	후생성(유육위생과) 국립위생시험원 지방 보건소
수입축산물검사	동물검역소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FSIS/USDA)	후생성 검역소

4. 현제도의 문제점

○행정조직의 다원화로 강력한 중앙통제 수의행
정의 수행이 지남함.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
내무부(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수의행정조직의
다원화로 신속·정확한 업무집행 지남.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범국가적 차원의 가축방
역체제 확립이 요구되고 있음.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가축방역체제 정비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장확한 진단 및 방역조치로 전염병 확
산방지로 양축농가의 피해 최소화 요구.

○선진화·세계화·국제화에 걸맞는 국가 수의행
정조직의 개편 필요

-외국의 수의조직과 대등한 수준의 수의조직 개편
으로 국가 공신력 제고 필요.

5. 대 책

기본목표

○가축위생업무의 중앙통제기능 확립

↳UR협상타결에 따른 국내의 여건변화에 신속
히 대처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국내방역 및 국제검역의 효율적 대처
 ○축산물내 잔류물질 방지 등에 효율적 대처
 ▷수입축산물 및 국내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로 국민보건 향상 기여
 ○가축위생 연구업무의 활성화

【제1안】

기본방향

○국립수의검사소(가칭)를 신설
 -WTO 출범에 따라 선진국(미국의 FSIS)의 수의관련조직과 형평성 유지

○국립수의검사소에 국립동물검역소 및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의 진단·검사기능을 이관하여 실험실 정밀검사(Laboratory inspection) 전담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국립수의검사소 산하기관(2차 관서)로 개편

○농림수산부에 동물검역소 국제정보과를 “동물방역과”로 개편
 -동물검역소 지소(5개소)를 본부 1차 관서로 개편.

○수의과학연구소 내에 “해의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터” 설치.

【제2안】

기본방향

○가축위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 수의조직의 개편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검사소(가칭)로 개편

○국립수의검사소에서 수입동물·축산물 및 국내동물·축산물에 대한 가축전염병검사 및 위생검사 업무 담당.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국립수의검사소 산하기관(2차 관서)으로 개편.

○농림수산부에 국립동물검역소의 국제정보과를 동물방역과로 개편
 -국립동물검역소 지소(5개소)를 본부 1차 관서로 개편.

○수의과학연구소는 순수연구 및 유전공학 등 첨단업무 주력.
 -수의과학연구소 내에 “해의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터” 설치.

【제3안】

기본방향

○국립동물검역소의 조직 및 인력보강
 -개방화·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적극대처

○검역기술 인력보강
 -(현) 203명 → 448명(증 245명)
 ○수의관(4명) 해외주재로 검역 및 방역정보 신속입수 및 대처
 -미국·일본·EU 및 호주
 ○부산지소에 정밀검사과 및 대전지소 신설
 ○수의과학연구소의 기능강화.
 -동물약품부 및 해의악성가축전염병 연구센터 설치.

가축위생업무실적

구 분	'80(A)	'90	'94(B)	비고(B/A)
도축검사(천두)	2,542	9,157	10,667	420%
○소	537	554	778	149
○돼지	2,005	8,603	9,889	493
원유검사(천톤)	452	1,752	1,917	424
가축방역(천두수)	5,642	5,187	5,053	90
○예방주사	5,308	4,559	4,284	81
○검진	316	628	769	243
검역	1,580	3,484	4,803	304
○동물(진수)	1,318	2,725	3,949	300
○축산물(천두)	262	759	854	326